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50호

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#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·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,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: 최대 0.06% → 0.10%  
(안 [별표1] 중 3.우대요율)

-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, 고정금리 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“우대요율”의 폭을 기존 0.01~0.06%에서 0.01~0.10%으로 확대
-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

## 나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: 최대 0.06%→0.10%

(안 [별표2] 중 3.우대요율)

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, 고정금리 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 요율의 폭을 기존 0.01 ~ 0.06%에서 0.01 ~ 0.10%으로 확대
-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

## 다.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(안 제7조)

-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거시금융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거시금융팀)

- 주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- 전화 : 02-2100-1691
- 팩스 : 02-2100-1699
- 이메일 : [joho88@korea.kr](mailto:joho88@korea.kr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 / 지식마당 / 법령 정보 /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